



제 410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관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의 장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지정〉
■ 허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651호)

2023.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관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의 장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지정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은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22.

다. 회부연월일 : 2023.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이므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Ⅲ. 검토의견

1. 소관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의 장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지정

소관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의 장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지정함
(안 제10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과태료) ① ~ ⑤ (생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⑥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 -----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 ----- ----- ----- ----- ----- ----- ----- -----.

□ 검토사항

-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¹⁾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로 인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에 해당함.
- 그런데 동법 제104조제6항²⁾에 따르면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징수권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되어 있는 바, 개정안은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
- 본래 2022년 6월 10일 개정 이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 제84조의2제3항 위반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부과·징수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생략)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제104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략)

6. 제84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생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그런데 2022년 6월 10일 법률 개정 당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법체계상 오류가 발생한 것임.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전기통신사업법」 (‘22.6.10 개정 이전)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8869호, ’22.6.10., 일부개정 / 시행 ‘22.12.11)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 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5.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5. 삭제 <2022. 6. 10.></u>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대해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검사업무 및 이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인바, 법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현재도 실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동법 시행령 제65조³⁾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제8호의3·제14호·제15호·제16호·제16호의2·제16호의3·제20호(법 제84조의2위반에 대한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 제2항 제5호및같은 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생략)

16의2.법 제84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